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80호 2019. 12. 2(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8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2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37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17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과”를 “단·실·담당관·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하부행정기관중”을 “하부행정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람”을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무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제55조제4항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76조제5항 본문 중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로 한다.

제7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 5)에 의하여”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장의 제목 “보칙”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중 “대”를 “때”로, “이네”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불임”을 “불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호부터 5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 직 명	본 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관서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동
회 계 책 임 관	자치행정국장	-	-	-	-
징 수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분 임 징 수 관	세무1·2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 무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자치행정국장	-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예산실장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	-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실장	-	-	-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	-	-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하도록 한다.

- 비고 1. 0000담당 : 시·도(팀·계장 등의 5급 이상), 시·군·자치구(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시·도(5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시·군·자치구(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p><u>의회사무국, 보건소, 출장소,</u> <u>동 행정복지센터</u></p>	<p>지출원이 없는 관서</p>

〈별표 3〉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류 · 수당류 · 보조금 · 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 · 출연금 · 제세 ·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교부결정시) 출자 또는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	당해 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 용자금 · 공사비 · 기타 	납부결정시 용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	납부결정액 용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3. 기타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금 · 보증금 · 특별판공비 · 기타 	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결정시	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계약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별표 4>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관서의 일상경비	교부결정시	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결정시	전용결정금액
3.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 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이월예산등에 의한지출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반납금액
6. 계속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시	채무부담행위액

〈별표 5〉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1. 지급기준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예금 예 탁	만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지방자치단체취 급점(금고)의 정기예 금 중 최고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 약보증금, 차액 보증금
별단예금 예 탁	만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 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 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 약보증금, 차액 보증금을 제외 한 보관금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 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2. 정기예금의 만기일

가.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완료일까지 만기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

나. 계약이행 중에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

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음

3.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가. 전환기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19 - 218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4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GB관리팀, ☎ 560-4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단위 : 원/m²)

지 목	지목별 평균치	지 목	지목별 평균치
전	327,545	하 천	224,750
답	199,965	제 방	174,132
과 수 원	243,084	구 거	150,062
목 장 용 지	463,149	유 지	178,201
임 야	96,275	수 도 용 지	540,901
광 천 지	-	공 원	317,706
염 전	405,433	체 육 용 지	226,484
대	1,268,335	유 원 지	894,630
공 장 용 지	901,518	종 교 용 지	1,173,400
학 교 용 지	1,157,448	사 적 지	-
도 로	345,048	묘 지	137,587
철 도 용 지	144,672	잡 종 지	600,427
주 유 소	1,251,110	창 고	654,357
주 차 장	1,218,540	양 어 장	143,70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2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원당대로 850 외 2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12.0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12-0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28-6	인천광역시 서구 권당대로 850 (당하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프린지타워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71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18 (가좌동)	20090710	인천에서 육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0-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111-5 (석남동)	20090922	도로가 지나는 석남동이 동명술 따 명명 옛 석곶면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	
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53-3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로 19-3 (원창동)	20090922	자연부락명이자 섬 이름을 따 명명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43-8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로 11 (원창동)	20090922	자연부락명이자 섬 이름을 따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12-1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 508 (검암동)	20090922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로 불렸던 송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40-95	인천광역시 서구 읍도로 47-4 (신현동)	20090922	밤샘 밤섬 읍도로 들어가는 길이므로 읍도로라고 명명	
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47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30-1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36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25-1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6-11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16-43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6, 958-40, 958-48, 958-58, 958-68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32-8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2	인천광역시 서구 비치나사로181번길 18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9번길 26-2 (청라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6-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23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7-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2번길 18-16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6-2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466번길 16 (청라동)	20190429	파랑로 시작지점에서 4,660m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치

고시일 : 2019-12-0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가좌동 178-479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72 (가좌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72 (가좌동)	소유자 신청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가좌동 178-22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70번길 5 (가좌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오류동 1574-3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4로 10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4로 10 (오류동)	소유자 신청	20121025	우리구 해남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네번째 도로
4	오류동 1574-6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4로 12 (오류동)		20121025	우리구 해남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네번째 도로
5	오류동 1574-4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2로 29 (오류동)		20121025	우리구 해남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두번째 도로
6	오류동 1574-5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2로 31 (오류동)		20121025	우리구 해남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두번째 도로
7	오류동 1574-2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52 (오류동)		20111115	인천 서구 정서진의 지명을 이용하여 '정서진로'로 명명 함.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9-22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2.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학교)의 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95-4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초등학교	서구 가좌동 395-4번지 일원	19,900	감) 749	19,151	인고 제1994-101호 (‘94.06.29.)	경미한 변경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학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인천가정초등학교	학교시설 면적 변경 : 19,900㎡ → 19,151㎡ (감 749㎡)	도시계획시설 경계와 학교 지적경계의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기 위함

4.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 1937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등록 및 폐기 사유

○ 조직개편(2019. 11. 4.)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19년 12월 2일

3. 등록 및 폐기 공인 내역

“별첨 참조”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등록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홍보정책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	인천광역시서구홍보정책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3	인천광역시서구홍보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4	인천광역시서구홍보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5	인천광역시서구홍보정책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 등록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홍보정책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9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홍보정책과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9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홍보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9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홍보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9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홍보정책과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9년 12월 2일	

○ 폐기 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홍보미디어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9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홍보미디어과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9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홍보미디어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9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홍보미디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9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홍보미디어과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9년 12월 2일	